

동래사적공원 오네프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22-3006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6.05.]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5.15.(금)	26.06.24.(수)	26.06.29.(월)	26.07.02.(목)	26.07.03.(금)	26.07.09.(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24.(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61**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15.(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217**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6.29.(월)	26.07.02.(목)	26.07.03.(금) [10:00 ~ 17:00]	26.07.09.(목) [10:00 ~ 17:00]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건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4, 2층)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6.06.05.**)로부터 **6개월간** 적용됩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15-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0층 2개동 총 110세대, 일반분양 110세대 중 잔여 2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동	호
2026910161	01	072.6854A	72A	72.6854	20.3240	93.0094	31.6537	124.6631	43.3783	2	101	2001, 2002
	합 계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동구분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2026-10-23		2027-02-23	2027-06-23	2027-12-01	2028-03-23	2028-06-23	입주 지정기간
072.6854 A	72A	101동 1호, 2호	2	20층	2	184,800,000	375,200,000	560,000,000	28,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7.02.(목) ~ 2026.07.11.(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7.0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 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인감도장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본인(청약자)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시 공급금액이 6억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견본주택에 비치된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7.09.(목) 10:00~16:00	동래사적공원 오네뜨 건본주택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4, 2층)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부적격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광주은행	1107-021-887095	코리아신탁(주)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아파트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상으로 시공되며, 비확장형으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20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2001홍길동'으로 기재)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일시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추가선택 품목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대 상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별도 납부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는 계약일에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 납부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c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	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세액	1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해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상호명	코리아신타(주)	주식회사 이엔지애프앤비	남해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 763번길 141-27, 6층 601호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42(광산동, 안산빌딩 4층)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34411-0095504	110111-0647870

■ 견본 주택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14, 2층

■ 당사 홈페이지: <https://www.동래사적공원오네뜨.com>

■ 분양 문의 : 1522-3006